에콰도르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1. 국명 : 에콰도르 공화국(República del Ecuador) 2. 수도 : 키토(Quito, 162만명) 3. 인구・면적 : 1,686만명(2018년), 283,560㎢(한반도의 약 1.3배) 4. 공용어 : 스페인어, 케추아어 5. 1인당 GDP : 6,098불(2018년) 6. 독립일 : 1822.5.24.(스페인으로부터) 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대통령중심제, 단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○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Ecuador (Corte Constitucional del Ecuador)

2. 연혁

○ 1851년, 1906년, 1929년 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국가평의회(Consejo de Estado)가 존재하였으나, 법령의 위헌성을 선언하지는 못하고 제한된 권한만 행사

○ 1945. 3. 6. 헌법 개정으로 헌법보장재판소(Tribunal de Garantías Constitucionales) 설립

○ 1998. 8. 11.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(Tribunal Constitucional) 구성과 권한의 수정

○ 2008. 10. 20.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제도의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, 현행 헌법재판소(Corte Constitucional) 명칭으로 변경

3. 구성

□ 헌법재판관

○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Presidente)과 부소장(Vicepresidente)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(Juez)으로 구성

○ 재판관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명되는데, 동 위원회는 입법부, 행정부, 「투명성(Transparencia) 및 사회적 통제(Control Social) 기관」에서 각각 2인으로 구성

- 재판관 선출은 상기 위원회에서 제출한 후보자들 가운데 공개선발의 절차를 통해 결정
- 헌법재판소의 구성 비율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을 추구
-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헌법재판관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

○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연임 불가

-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불가
- 3년마다 재판관 1/3씩 교체

○ 재판관 자격

-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에콰도르 국민
- 에콰도르 법으로 인정되는 법학 학위의 소지자
- 최소 10년 이상의 변호사, 판사, 법학 교수의 경력이 있는 자
- 진실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
- 지난 10년간 정당이나 정치적 운동의 지도직에 소속되지 않았던 자

□ 헌법연구증진센터(Centro de Estudios y Difusión del Derecho Constitucional, CEDEC)

○ ‘관할권 보장 및 헌법적 통제에 관한 조직법’(Ley Orgánica de Garantías Jurisdiccionales y Control Constitucional)을 통해 2009년에 설립

○ 에콰도르 헌법, 비교 헌법, 인권 및 에콰도르 헌정사 분야의 연구 담당

○ 법조인,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헌법, 인권 교육 담당

4. 권한

○ 규범통제

- 헌법 및 에콰도르에서 승인한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최종적 해석
- 법, 규칙, 행정행위의 위헌여부 심판
- 부수적 규범통제
- 헌법 개정(안)과 국민투표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
- 국가 비상사태시 헌법적 권리의 보장과 권력분립에 관한 합헌성 통제

○ 보호소송, 이행 절차, 인신보호영장 절차, 개인정보보호 절차, 공적 정보 접근권, 성차별에 근거한 인디언 재판 등의 사건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(재판소원)

○ 헌법재판소 결정의 불이행에 관한 재확인 및 이행강제

○ 국가와 헌법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

○ 대통령 탄핵심판 및 의회해산

5. 심리 및 결정

○ a)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소지가 있는 개인, 공동체, 민족 등, b) 호민관(Defensor del Pueblo)은 모든 심판 절차에

서 청구 가능

○ 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5인 이상이며, 종국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소 재판관 5인의 찬성이 있어야 함

○ 규범통제의 결정은 기판력을 가지고 장래효 발생

- 법적 안정성과 공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, 헌법 규범의 최고 우위성, 헌법적 권리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소급효 인정

- 심판대상조문의 위헌 선고로 법적 공백이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음

○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불복할 수 없음

6. 연락처

□ 헌법재판소

○ 주　　소 : Av. 12 de Octubre N16-114 y
Pasaje Nicolás Jiménez, Quito
Ecuador

○ 전화번호 : +593 2 394 1800

○ 홈페이지 : https://www.corteconstitucional.gob.ec/

□ 헌법연구증진센터

○ 주　　소 : Av. 12 de Octubre N23-99
entre Wilson y Veintimilla, Quito
Ecuador

○ 전화번호 : +593 2 394 1800 Ext. 2101 - 2104

※ 출처 : 에콰도르 2008년 헌법

에콰도르 '관할권 보장 및 헌법적 통제에 관한 조직법'
Galo Stalin Blacio Aquirre, "La protección de los derechos en la historia constitucional ecuatoriana", Revista SurAcademia, N°2, diciembre 2014.
에콰도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

(2018. 6. 작성)